

[別表의3]

綠地, 地域內에 建築할 수 있는 建築物

- (1) 農業, 林業, 畜産業을 目的으로 當該 地域內的 土地 또는 原材料를 利用하는 業務에 쓰이는 것으로서 그 建築面積이 大地面積의 10分の 2未滿인 것
- (2) 前號의 業務에 從事하는 者の 居住의 用에 供하는 것으로서 그 建築面積이 垜地面積의 10分の2未滿인 것
- (3) 公園, 運動場, 墓地類의 施設에 附屬되는 觀覽席, 休憩所, 脫衣場, 關係事務所, 公衆便所 其他 이와 類似한 것으로서 그 施設의 機能을 다하는 데 必要的한 것
- (4) 住宅, 日常生活에 必要的한 店鋪, 寺院, 教會 其他 이와 類似한 建築物로서 그 建築面積이 垜地面積의 10分の 2未滿인 것
- (5) 學校, 圖書館, 公會堂, 病院, 託兒所, 養育院 其他 이와 類似한 公益上 必要的한 建築物로서 그 建築面積이 垜地面積의 10分の 2未滿인 것